

전자민원처리공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제출하신 처리내역입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민원내용

민원요지 건축법 질의

접수번호 1AA-1806-203003

접수일자 2018.06.18

질의내용

무더위속 행정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994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아파트 시공중 2008년도에 사업장이 부도처리된후, 2009년도에 건물대위등기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위로 낙찰받았으며, 실제 건물은 사람이 주거할수 있게 되었으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 다른 채권자와 협력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준공을 받으 려고 00군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그당시 건축법과, 현재 지진(진도6)보강 시공을 요하여, 채권자로서 난감한 상황입니 다. 처음 허가시의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법규처 럼 지진보 강 법규 적용이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알수없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을 청합니 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치영

전화번호 044-201-3648

회신내용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 1AA-1806-203003, 민원내용 : 붙임 참조)과 관련입니다. 2. 처리결과 : 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건축법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양성화 시켜주도록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인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등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주무관 정치영 (전화 044-201-4752, 이메일 jcheey@korea.kr)